#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13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구자근・박준태・김선교

최수진 · 김성원 · 인요한

조지연 · 김도읍 · 강명구

이만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산업에서 우수한 선수와 넓은 팬덤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이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하지만 이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가 경기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등 이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이스포츠 경기는 문화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12개의 이스포츠 경기장 중 8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에 대한 지원이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 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이스포츠 경기장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스포츠 경기장의 건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8조의2(이스포츠 경기장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스포츠
	경기장의 건립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
	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
	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